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행정지원과)

의안번호	제 65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2. 11. 14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민선8기 현장과 민생중심의 구정 운영 및 행정서비스 수요변화에 맞춘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(안 제3조 관련 별표 2)

○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비율

- 5급 상당 10% → 15% 이내 (증 5%)
- 6급 상당 40% 이내 → 45% 이내 (증 5%)
- 7급 상당 20% 이내 → 25% 이내 (증 5%)
- 8급 상당 이하 30% 이상 → 15% 이상 (감 15%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○ 일반직 계 : 1,576명

- 5급 : 68명 → 69명 (증 1명) (본청 32명 → 33명)
- 6급 이하 : 1,497명 → 1,496명 (감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범위 내 (총 정원 변동 없음)

다. 입법예고 : 2022. 11. 4. ~ 2022. 11. 7. 의견제출 없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1단 신설(도시정비 신속추진단)로 5급 1명 증원 및 일반직 6급 이하 1명 감원과 정원 책정기준 별표2, 별정직공무원 급별 비율을 현재 기준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▪ 별표 2 :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현재 기준으로 개정

- 5급 상당 10% 이내 → 15% 이내
- 6급 상당 40% 이내 → 45% 이내
- 7급 상당 20% 이내 → 25% 이내
- 8급 상당 이하 30% 이상 → 15% 이상

▪ 별표 3 :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변경

- 5급 1명 증원, 일반직 6급 이하 1명 감원 : 총 정원 변동 없음
- 5급 68명 → 69명
- 6급 이하 1,497명 → 1,496명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